

교육부령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제22호의2 서식 및 제28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앞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수수료: 없음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원본도 함께 제시)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1. 신고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3cm×4cm)
주소	(연락처:)	
학력 및 전공	(전자우편:)	
자격		
경력		

2. 신고내용

교습과목																
교습비등	<table><tr><th>유아</th><th>초등학교</th><th>중학교</th><th>고등학교</th><th>비고</th></tr><tr><td>월 원 (1시간당 원)</td><td>월 원 (1시간당 원)</td><td>월 원 (1시간당 원)</td><td>월 원 (1시간당 원)</td><td></td></tr><tr><td>월 원 (1시간당 원)</td><td>월 원 (1시간당 원)</td><td>월 원 (1시간당 원)</td><td>월 원 (1시간당 원)</td><td></td></tr></table> ※ 교습비등은 1명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적습니다.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교습장소																

3. 서명 및 날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과외교습자)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	검토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	결재 처리기관 교육지원청	→	신고증명서 발급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앞쪽)

신고 제 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사진 (3cm×4cm)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전공				
자격				
경력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				
교습비등 교습과목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월 원 (1시간당 원)
교습장소				
※ 교습비등은 1명당 금액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illegible]

신고포상금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괄호 안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 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구체적 사실 기술>
		주소	
	신고내용	선택 ()	
	학원 미등록 교습행위	()	
	교습소 미신고 교습행위	()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행위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행위	()	
	표시·게시·고지 또는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	
	교습시간을 위반한 행위	()	
	유아 대상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 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u> <u>제2호</u> 의 행위: 200만원 이내 2.·3. (생략) ② ~ ⑥ (생략)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 ----- ---. 1. <u>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부터</u> <u>제2호까지</u> -----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연 락 처	(044) 203 - 7031, 7034